

한일간의 현안을 실감한 유학생할

최봉태

1. 유학을 가게 된 경위

나는 대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1992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고향인 대구에서 개업하였다. 연수원 2년차때 대구에서 실무수습을 하면서 당시 전국을 뒤쫓게 했던 폐놀오염사태를 경험하였다. 피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상조사와 문제되는 관련 법규 위반을 검토하면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변호사 일개인으로서는 도저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 뜻이 맞는 변호사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열게 되었다. 당시 1년 앞서 개업을 하고 있었던 김준곤 변호사를 만나 변호사의 바람직한 상에 대해 의기가 투합되어 같이 연수원을 수료하는 송해익 변호사와 삼일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당시 삼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자는 의미 이외에도 삼일운동의 참정신을 계승하는 사무실이 되자는 목표, 그 위에 사무실의 위치가 삼일빌딩에 있었다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을 맡아 변론활동을 하였다. 미숙하나마 열의 하나만으로 부족함을 대신하려 한 기간이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김변호사, 송변호사와 함께

지역에서 노동관계사건, 학생·시국사건 등을 전담하며 활동하던 중 당연히 승소하리라 예상했던 사건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생기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 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 사무실을 공동으로 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구성원 각자의 발전이 사무실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에서 유학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가급적 젊을 때 나가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기초로 사무실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자라는 합의였다. 이에 따라 사무실의 만행격인 김변호사님은 나부터 나가라고 하고 송변호사도 밀어주어 나부터 나가게 되었다.

유학지를 일본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법조실무가로서 일본의 법률에 대한 실제적 수요를 느끼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 한일간의 과거사문제가 무엇 하나 해결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사건관계로 알게 된 의뢰인이 일본어학원 강사로 유학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간접적 계기가 되었다. 전공은 노동법으로 하고 학교는 일본의

대표적 대학인 동경대학으로 결정했다. 지도교수는 스게노 가즈오 선생으로 정했다. 일본 노동법의 대가이며 균형 감각을 가진 분으로 그분의 저서는 일본에서 대표적인 교과서로 알려져 있어 일면식은 없었으나 편지를 보냈고 우여곡절 끝에 연구생으로 면접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2. 고마바 시절

1994년 3월 1일 11:20 부산발 KAL714편으로 동경으로 출발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두 가지의 다짐을 했다. 하나는 일본에서 노동법으로 학위를 받아오자는 것과 또 하나는 사무실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일본유학을 통해 얻어오자는 것이었다. 일본에 도착하여 한동안은 일본에 미리 와서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의 집에서 머물렀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방을 알아보았으나 일단 혼자 있으면서 방값을 우리 돈으로 60만원 이상 지불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기에 고민하던 중 우연히 고마바에 있는 동경대학 교양학부의 기숙사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 70년 이상 된 기숙사로 학교측은 폐사를 결정했으나 학생들이 반대하여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학생의 경우도 사정에 따라 입사를 허락한다고 하였다. 방값도 월 5천엔 정도여서 좀 불편하더라도 감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일본어 공부의 필요성도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공동생활하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 방에서 일본인 학생 2명과 함께 생활하였다. 내가 의식적으로 사귀려 노력했으나 10년 이상의 나이 차와 일본인 특유의 조심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사귄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보통 일본학생의 생활을 볼 수 있어 유익하였다. 기숙사에 거주하며 일본어학교를 다니면서 9월에 있는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다. 일본어학교 이외에는 동대 혼고캠퍼스의 연구생 공동연구실

에서 입시 준비를 하였다. 약 6개월의 준비기간이어서 다른 데 신경 쓸 틈은 없었다. 일본인 튜터의 도움을 받아가며 영어와 전공의 두 과목 시험을 치렀다. 일본에 도착하여 안 것이나 동경대에는 전수과정이 있어 외국에서 출원하면 시험을 면제받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유학 준비가 부족했음을 실감하기도 했으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험을 치렀다. 입학시험을 치르고 6개월만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연구생의 학기가 계속되는 관계로 일본에 돌아갔다.

수업부담이 크지 않았던 관계로 시험발표를 기다리며 등산을 가기도 하고 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 25미터를 헤엄쳐내는 기쁨도 맛보았다. 어쩌면 일본 유학의 최대성과(?)가 수영을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다들 기뻐해주었다. 이와 아울러 마음껏 읽고 싶은 책들을 읽었다. 북한법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문제, 재일동포 관련자료 등을 주로 읽었다. 저녁이면 근처에 있는 우에노에 유학생들과 함께 가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중에 유학생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아울러 일본에 와서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애환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동대에는 특허청에서 유학을 온 심사관이 계시기에 최은순 변호사와 함께 특허법에 관한 스테디도 하면서 다음 학기 준비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전후보상관련소송에도 가보았고 재일동포 차별소송재판 방청도 하였다. 김경득 변호사를 통하여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기타 과거사 미해결의 문제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끼리의 집회, 시위에도 참가해보았다. 그 속에서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소수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고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해볼 수 있었다.

3. 대학원 1년차

시험에 무사히 합격하고 난 후, 다음해 3월 정들었던 고마바를 떠나 다카시마다이라라는 곳에 방을 얻어 가족을 불렀다. 이와 아울러 대학원 1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동경대학 대학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30학점인데 2년차에는 논문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1년차에 가급적 많은 학점을 따지 않으면 안되어 이로 인해 한 학기당 12학점을 신청했다. 과목으로는 6과목인 셈이다. 미숙한 일본어로 수업에 참가하고 발표를 하려니 예사 부담이 아니었다. 특히 독일어원서 강독은 책을 번역하여 낸다는 목적으로 한 수업이어서 생각 이상의 부하를 느끼게 했다. 그리하여 가족들이 초기의 외국생활을 하는데 이를 보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 적응기간중에 임신 중인 처와 아들인 병준이가 먼저 귀국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대학원 수업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 해도 노동관계 연구수업이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하는 수업이었는데 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동대 교수는 물론 태대학의 관련 교수와 변호사들도 수업에 참가하였다. 그러기에 발표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보통 한 달 전부터 자신의 발표 준비에 들어가고 발표 끝에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잡지 『주리스트』의 평석란에 실게 되는 것이었다. 보통은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판례를 선정하여 평석을 하므로 자연히 평석이 충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물은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일본시스템을 수업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다.

수업준비에 쫓기면서도 그 해는 해방 50주년이 되는 해이기에 이를 기념하여 유학생들의 연구포럼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다. 주제는 「해방 50주년과 중군 위안부」였다. 송신도 할머니의 재판을 따라다니면서

해방 50주년이 되어도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의 대표적인 문제가 정신대할머니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예상 이상의 일본인들의 참여도에 놀라기도 하여 이를 한번 정리해보자는 취지에서 발표를 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신대문제는 피식민지의 민족문제일뿐만 아니라 여성문제, 평화문제, 계층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문제화되는데 어쩌면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의 문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우익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주장 중에 “한국에서 조차 피해자의 증언 이외에는 강제성을 입증할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강변이 그것이다. 거듭되는 망언에 분노함과 동시에 하나하나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에 남겨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해방 50주년을 맞아 재일동포들이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동경과 오사카에서 열었는데 그곳에 참여하여 재일동포들의 삶 전체를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 모임을 통해 재일동포는 한일간에 평가가 유지될 때만이 그 삶이 안정적인 것이며 국민주권국가를 넘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치적 집단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재일동포들은 민족문제와 동시에 반차별이라는 민주운동의 커다란 자산이 되어 분단 극복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재일동포의 차별문제를 생각하면서 늘 비교가 되었던 것이 우리 사회의 폐쇄성과 차별구조였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식민지시대를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폐쇄성과 차별성부터 극복해야 할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다.

4. 대학원 2년차

1996년 3월 동대의 시로가네다이 기숙사로 이사를 하였다. 일본유학의 마지막 해가 된 것이다.

학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자 사무실 관련 일들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논문 부담도 적지 않았으나 사무실 관련 일들을 찾아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법무성에 가서 외국법 사무변호사제도며 일본의 변호사업계의 사정을 알아보려 다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법조자격시험인 일본사법시험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였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나,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주권국가를 넘어 새로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양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활동을 하면 대단히 할 일이 많으리라는 생각에서 실패를 각오하고 시험원서를 내어 시험을 치러보기도 하였다. 시험이 끝나자 한국으로 귀국하여 약 1개월 만에 걸쳐 삼일합동법률사무소를 법인으로 만드는 일에 관여하였다.

무사히 법인이 출범되고 난 후 일본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논문 준비를 하였다. 논문 제목은 「유기노동계약의 종료에 관한 일고찰 - 일본의 판례법리의 개적」이었다. 일본에 건너오기 전에 대학교원의 제임용 탈락사건을 소송수행하면서 고용계약과 노동계약을 동일시해서는 안되고 당사자의 합의를 병자한 일방적인 사용자의 논리가 관철되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흔히 일본의 고용시스템을 설명할 때 종신고용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종신고용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변부의 임시공들의 고용 불안이 있어왔고 일본사회의 고용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부 노동자의 고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전후 50여년간의 임시공을 위시한 유기고용노동자에 대한 신분보장에 관한 판례법리의 도달점과 문제점을 분석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판례도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투

하여왔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논문을 준비하며 일본적인 시스템이 학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학문적인 정리와 연구 여건에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법학부 도서관에 들어가 컴퓨터로 키단어를 두들기면 관련되는 판례와 평석, 연구논문을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었고 이를 갖고 서고에 들어가면 금방 복사할 수가 있었다. 50권까지 3개월, 다른 학생이 찾지 않으면 언제까지든 서고의 도서를 이용할 수가 있었다. 튜터의 도움으로 논문을 정리하여 무사히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일본의 노동법제와 우리를 비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노동법에 형사적인 처벌조항이 많다는 것과 노동단체법의 독소조항이다. 그리고 그 독소조항의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노동법제에 있어서도 식민지의 청산이 필요한 것임을, 나아가 우리 실정에 맞는 노동법을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임을 느꼈다. 이와 아울러 우리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국제화의 기본 조건임을 깨달았다. 유학 도중 어느 일본인이 “당신들 한국인들은 흔히 문명은 일본이 앞서 있으나 문화는 한국이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 중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이 생각이나서 이를 설명했더니 일본인답게 예를 들어보라고 한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훈민정음의 창제였다. 그랬더니 그 일본인은 수긍하였다. 간신히 위기를 넘긴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인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많았다. 우리가 가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보편화해내는 것이 국제화시대의 우리 역할임을 배우게 되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법무법인에 30여명의 규모로 삼일문화센터를 만들었다. 아직 예산이 부족하

여 본격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교양강좌, 전시회, 문화관련법령 및 조례의 검토 등을 통해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문화법인으로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결심이다.

5. 일본 유학을 마무리하며

사흘 전에 일본에 가서 학위수여식에 참가했다. 이제 유학생생활은 일단락이 된 것이다. 이 유학생생활을 통해 무엇을 얻었던가를 자문하게 된다. 모자라던 능력으로 부대끼다가 돌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 법무법인 삼일이 성장을 위한 첫 계획을 일단 무사히 마쳤다는 것,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한일간에 가로놓인 현안들이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어느 만큼 실천해 낼 수 있을까는 지금으로부터의 과제이다. 유학 3년 동안 여러분들의 은혜를 입었다. 이 글을 통해 그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위험한 아이들

임종인

1. '이달의 민변'의 인권영화 소개란

누가 기획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작년 『이달의 민변』 8월호 조광희 변호사님의 「데드맨워킹」 영화평을 시작으로 『이달의 민변』 매호에 이형근 변호사님의 「폐지가 우물에 빠진날」, 정연순 변호사님의 「코르셋」, 이유정 변호사님의 「세친구」, 김기중 변호사님의 「네트」 영화평이 차례로 실렸다. 평소 존경하며 좋아하는 분들의 영화평이고, 영화평은 잡지같은 데서 보고 “아하! 내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것을 영화평평가들은 이렇게 의미 부여도 하는구나”고 감탄한(주눅든) 적이 많아 위 분들은 어떻게 쓰나 하고 열심히 읽었고, 어느 민변 변호사 모임에서 영화평을 쓴 몇 분에게 영화에 대하여 참 많이 안다고 진심어린 칭찬을 한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위 분들은 영화에 대한 지식이 내가 늘 감탄하는 영화평평가 이상이란 것을 알았고, 수많은 영화를 보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날 민변 간사가 전화를 하여 나에게 『이달의 민변』 인권영화소개라는 난을 쓰라는 느닷없는 원고청탁을 하였다. 사실 영화를 자주 보지도 못하고, 영화를 봐도 꼭 옆에 누가 있어서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 남의 영화감상을 방해하고, 영화가

끝난 후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야 겨우 줄거리나마 파악하는(이것도 주관적으로, 그리고도 보고난 영화에 대한 영화평론가의 글을 보고 내가 판단한 것이 핀트가 어긋나 당황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 낮은 수준이라 민변 간사의 글 청탁을 당연히 거절하면서 “누가 나에게 그런 글을 쓰라고 말했는가”라고 배후를 캐고자 했다. 그러나 배후는 밝혀지지 않고, 출판위원장 차병직 변호사님의 원고청탁문서가 정식으로 사무실 팩스로 왔다. 직원으로서 조직적 결정을 따르는 것을 나름대로 신념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주어진 이 독배는 마실 수밖에 없다”는 체념으로 할 수 없이 승낙하였다.

그러나 무슨 영화에 대하여 쓴다는 말인가? 이것이 어렵다. 평소 존경하는 차병직 출판홍보위원장께서는 다음부터 다른 분에게는 영화를 지정해서 인권영화 소개를 청탁하시기 바란다. 할 수 없이 동네 비디오 가게에 가서 “요즘 좋은 영화가 무엇이나?”고 묻고, 민변의 ‘영화고수’들에게도 물어 여러 편을 보았으나 다 마땅치 않고, 시간만 흘러 민변 간사로부터 독촉전화가 온다. 오늘은(4. 1.) 작심하고, 밤을 새 각오로 영화를 다시 보고 쓴다.

2. 「위험한 아이들」(원제: Dangerous Minds)

다음대로 골라 소개하고자 하는 영화는 「위험한 아이들」이다. 이 영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영화와 연속해서 본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 둘 다 모두 미국 고등학생들 이야기인데, 미국사회의 주류층 학생의 문제와 소외계층 학생의 문제가 이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에서이다.

가. 미국사회의 인종별 인구구성과 빈부차

미국인구 약 2억5,000만 중 백인이 70% 정도인 1억7,500만명, 흑인이 13% 정도인 3,250만명, 히스패닉(중남미계)이 9% 정도인 2,250만명, 아시아계가 3% 정도인 750만명, 인디언이나 에스키모 등이 1% 조금 못되는 200만명 정도, 기타 4%가 살고 있다고 한다. 80년대 말 미국인 중 절대빈곤층이 13%였는데, 흑인의 30%와 히스패닉의 26%는 절대빈곤층이라 한다. 또 어린이들과 함께 혼자 사는 어머니의 45%가, 18세 이하의 어린이 중 20%가 절대빈곤층이라 한다. 88년도에 가장 가난한 인구 10%가 세금을 낸 후의 가계수입이 년평균 3,286\$, 그 위 10%의 수입은 7,277\$에 불과하다고 한다(출전 미국현대사책 『Present Tense』 Houghton Mifflin Company, 1992 604-606, 516쪽). 흑인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 히스패닉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마이애미 등 남부 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영화의 줄거리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캘리포니아주(인구 3,000만명으로 미국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이다)의 어느 도시의 고등학교에 임시교사로 발령받은 한

미모의 백인여교사 루엔 존슨(미국영화에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은 거의 백인이다 여기서 미셀 파이퍼가 등장)이 문제아(?)학교의 문제아학생(모두 흑인과 히스패닉 남녀학생이다)의 담임을 맡아 학생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대하여 학생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려 하는 여교사를 학생들이 붙든다는 내용이다. 미국 흥행영화의 내용이 대체로 뻔하지만,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우리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와 선생님, 학생 사이에서 느낀 것이 많고, 교육에 대하여는 누구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은 미국 교육영화와 교사를 통하여 교육과 사회에 대하여 몇 마디 할 수 있기 때문이다(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는 미국 동부 상류층 학생의 한가한 '죽은' 이야기라면, 이 영화는 미국 서부 하류층 학생들의 삶의 고통이 '살아있어' 훨씬 좋게 생각되었다).

다. 내가 느낀 몇 가지

(1)가난과 공부에 대하여

이 영화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들의 학력은 영어의 기본동사를 모르는 수준이고, 상당수는 영어를 쓰고 읽는 데 익숙치 못하다. 존슨 선생이 몇 학생의 집을 방문하여 부모를 만나는데, 그 가정은 아버지가 없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를 바라는 부모들이다. 학교에 열심히 나오라는 선생의 충고에 부모들은 "고등학교 졸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사나 변호사가 될 것도 아니고"라고 따지고, 학생들은 "당신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 1주일만 살아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히려 나무란다. 맞는 말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력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빈부에 의한 거주지역이 대체로 정해져 있지만, 이 영화 미국의 도시보

다는 말한 것 같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흑인이나, 히스패닉사람에 대한 경멸이 미국 백인보다 더 노골적인 것 같아 걱정이다. "지주보다 미름이 더한다더니" 이런 꼴은 아닌지.

(2)여선생(여자)의 복장 문제에 대하여

처음 수업에 들어간 존슨 선생은 학생들이 너무 놀리고 떠들어 수업을 못하고 나와서, 다음날 수업에 들어올 때는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오는 등 복장을 우아한 옷에서 사뭇 전투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온다. 또 해병대에 근무한 제대여군인으로서 가라테를 가르쳐 학생들을 제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마를 입는 것은 우아한 여성상을 강요하는 남성들의 이데올로기라서 바지만 입는 여자분을 보았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치마는 여자만 입어야 하는가? 피지에 갔더니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 것을 보았다. 치마입기를 제도적으로(학교나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되겠다. 제대군인으로서 가라테를 가르쳐 학생들을 제압하는 교육방식에 대하여 어떤 우리나라 여선생님은 "힘없는 여자는 거친 남학생을 가르치기가 곤란한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2)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떠드는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카세트틀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교탁이나 책상을 쳐 박자를 맞추고 노래를 크게 불렀다. 수업시간에도 자기들끼리 크게 떠들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은 무조건 학교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젊은 학생들이 어떻게 조용히만 있을 수 있는가. 내 생각은 "쉬는 시간에는 마음껏 떠들고

수업시간에는 들을 사람은 듣고, 잘 사람은 자퇴, 조용히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이다. 내가 일본과 미국에 있을 때 보니, 정해진 수업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을 때 미국 워싱턴대학 학생은 선생이 말을 하고 있더라도 책 싸가지고 나가버렸고, 일본 기독교대학 학생은 선생이 "미안하다. 할 말이 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들어주었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음료수를 마시든가 모자를 쓰고 있든가는 모두 자유였다. 미국에서는 남녀 모두 거의 다리를 쪽 뺀고 누워서 수업을 듣는 학생도 많았다. 97년 우리나라 대학은 어떠한가? 70년대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수업중 컸는데 학생이 일방적으로 나가거나, 수업시간에 모자를 쓰고 있거나, 음료수를 마시면 막 나무랐다. 지금은 달라졌는지? 나는 조용히만 들으면 복장이 어떻든, 음료수를 마시든, 거의 누워서 듣든 교수가 관여할 문제(교수는 이런 것을 나무랄 시간에 좀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3)남녀 합반에 대하여

이 영화에서는 당연히 남녀합반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당연히 남녀합반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이 허용하는 남녀공학인 학교에서도 남녀반을 따로 두는 학교도 많은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남녀가 같이 사는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6년만 남녀가 떨어져 있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고위간부 또는 기성세대 자신의 부모덕성 때문에 학생들마저 의심하여 남녀학생을 떨어뜨려놓는 것은 아닌지?

(4)여학생 임신에 대하여

캐리라는 여학생이 임신을 하는데, 임신한 학생을 제적시킬 것인가를 놓고, 교감 선생과 존슨 선생이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어떤가? 고등학교 여학생은 임신하면(애를 낳으면) 배울 권리를 박탈시켜야 하는가? 불과 몇십년 전까지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애를 낳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던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애를 낳을 것을 '권할' 필요야 없겠지만(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짐이 많다) 제적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자신의 자유의사로 고등학교 여학생은 임신할 수 없는가? 우리나라 어느 여자대학은 결혼하면 제적시키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제도가 없어졌는지? 고등학교도 아닌 대학에서 배울 권리와 임신이 왜 양립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5)교육위원회나 교장 등 교육간부와 평교사에 대하여

교장은 예의를 강조하고, 교육위원회 방침에 충실한 사람이다(교과과정에 없는 시를 가르치는 존슨 선생에게 사표를 쓸 것을 암시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문제를 상담하려는 학생이 문에 노크를 하지 않고 들어 왔다고 면담을 거절한다). 학생들의 구체적 현실을 모르는 제도인간같은 교장은 흑인을 기용하였다(영화 속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지위가 높다고 흑인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위원회 방침이나, 교장 등 교육간부는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교육 이데올로기를 학생이나 평교사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임무겠지만, 교사들은 이를 벗어나야 한다. 이 영화에서는 이를 벗어나려는 존슨 선생의 행동이 나오는데, 이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탁월한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것을 보장해주는 제도나

환경이겠지.

(6)기타

학생폭력, 여선생에 대한 남학생의 성희롱,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청소년의 범죄 원인,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3.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육성

96년도 미국영화 시장규모(미국과 세계의 극장 상영, 비디오 판매, 텔레비전 방영료 등 포함)는 약 197억\$이라 하고, 96년도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시장규모(극장 상영, 비디오 판매, 텔레비전 상영료 등 포함, 외화·국내영화 포함)는 약 1,000억원(1억 2,000만\$)이라 한다. 우리나라 영화 시장규모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 9위라 한다. 그리고 96년도 최고의 흥행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흥행수입은 4억8,000만\$이었다고 한다(권혁조, 「국제영상시장의 구조」 고대인문대학원 97. 3. 31. 강의안). 「위험한 아이들」의 흥행 수입은 8,500만\$이었다고 비디오테이프 선전문구에 쓰여 있었다.

비디오의 보급이 확대되더라도 영화는 계속 존재 하리라 믿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영화산업을 소비재 산업이 아닌 생산재 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외화수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독일 통일의 법적 조명

김진욱

1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로 말미암아 나타난 분단국 중에서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하나의 독일로 통일됨으로써 이제 우리 한민족만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최근 북한이 경제위기와 심각한 식량문제로 말미암아 체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징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우리 한민족도 조만간 통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남북통일방안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통일에 대한 논의는 남한정부의 '한민족민주공동체통일방안' 이든, 북한당국의 '고려연방제안' 이든 어느 것이나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구체적인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은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이후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20년 가까이 만전의 대비를 했던 독일의 경우도 급작스런 통일이 이루어지자 허둥댈 수밖에 없었고, 그 후유증이 심각

하다는 현실을 목도할 때, 통일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사안별로 연구하여 통일 후의 대비책을 하나씩 마련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겪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음은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2

이에 우리 「민변 통일위원회」는 독일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겪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경험을 알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허영 교수가 편저한 『독일통일의 법적 조명』을 읽고 세미나를 하기로 하였다.

위 책은 독일통일과정에서 제기된 중요한 법적인 문제점들을 10개의 주제로 나눈 다음 이를 허영 교수와 같이 모두 독일에 유학하여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는 여덟 분이 나누어 집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정된 10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동서독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헌법논의
- 제2장,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조명
- 제3장, 독일통일과 법질서통합과정
- 제4장, 동서독통일과 선거법통합
- 제5장, 동서독통일의 불법청산문제
- 제6장,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규율
- 제7장, 동서독통일과 사회보장질서
- 제8장, 동서독통일과 경제·재정질서
- 제9장, 독일통일과 기본법의 개혁문제
- 제10장, 동서독통일의 이상과 현실

위 10개의 주제 중 제2장, '독일통일의 국제법적 조명'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은 통일의 방식이 무엇이지에 관계없이 통일의 완성은 서로 다른 법질서가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 되는 것- 즉, 하나의 헌법질서로의 통합-인데, 법질서는 국민생활의 기초로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바, 어렵고도 민감한 하나의 과정으로써 법질서의 통합을 이룩하는 데 있어 독일민족 앞에 제기된 문제는 어떤 것이었고, 독일민족이 이를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살핌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법적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얻어야겠다는 것이다.

3

위 책은 주제와 저자가 다른 각 장의 병렬구조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나는 제3장부터 먼저 읽기를 권한다. 왜냐하면 위 책은 제3장에서 동·서독 간에 법질서의 통합을 위하여 체결되었던 각종 조약(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약칭 '통합조약' 1990. 5. 18. 체결), 선거조약(1990. 8. 3. 체결), 통일조약(1990. 8. 31. 체결)-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을 살핀

다음 이들 조약에 따른 동·서독 법제도의 구체적인 통합과정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나머지 장에서는 제3장에서 이미 개괄적으로 언급된 주제들을 좀더 상세히 살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제3장을 통해 독일 법질서 통합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4

독일통일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를 살핌에 있어, 저자들은 독일통일이 정치적으로는 흡수통일의 방식으로 일거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법질서의 통합 만큼은 서독 기본법이 자동적으로 새로 가입된 동독지역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단순구조가 아니라, 동·서독 사이에 통일을 지향하는 진지한 조약 체결 절차와 이에 따른 서독 기본법의 부분적인 개정 및 동·서독 법률의 과도기적 수용 내지 제한 등 엄청난 규모의 작업을 동반한 지난한 노력의 과정이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동·서독은 통일을 위해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의 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그 조약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 및 기본법을 개정하고 각종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했으며, 개정 및 제정되는 기본법과 법률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여부를 둘러싼 수차례에 걸친 헌법소원사건이나 권한쟁의사건을 경험해야 했고(제3장), 통일 이후에도 서독의 발달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구동독에 이식하는가 하는 문제(제7장), 구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가재정질서의 형성문제(제8장), 구동독이 남긴 미해결재산에 대한 처리문제(제5장) 등에 관한 각종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했다.

5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위 책의 저자들은 독일 통일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통일의 방식이 실사 흡수통일이라 할지라도 법질서의 일시적이고 총괄적인 통합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통합에 따른 과도기적이고 이원적인 법상태의 존재가 불가피하여 법질서의 통합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질서 통합에 의해서만 매듭지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규범적인 접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통일과정에서 법률가와 법학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셋째,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평화적인 평등통일의 길은 독일식의 흡수통일과 달리 남북의 대립적인 이데올로기를 조화시켜야 하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있다.

6

현재 우리 민족의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보면, 남북의 치열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이에 따른 비정상적인 통일논의의 제약에 대한 반발로, 통일이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통일지상주의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통일을 정치적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분단민족에 있어 통일은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는 하나의 계기일 뿐 결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점, 또한 통일은 국가단위의 통합으로써 해방 후 우리 민족이 경험한 어떠한 변화보다도 더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에 통일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비를 하여야 할 과제라는 점, 남북의 통일은 결국 분열된 채 수십년간 다르게 형성되어 온 두 개의 법질서를 하나의 법질서로 통합하는 것이기에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동참이 요구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민음으로 이룬 값진 승리!

이 광철

이광철은 94년 6월 20일경 구국전위사건과 관련 수배. 96년 5월 14일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국가기밀 누설,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으로 기소. 96년 11월 12일 1심재판(서울지법 합의21부 재판장 민형기)에서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97년 2월 20일 2심재판(서울고법 3부 재판장 김인수)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됨.

고통스러웠던 안기부 수사

대한민국에서 간첩으로의 낙인은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어떠한 천형보다도 더 두렵다고 생각한다. 어느날 TV뉴스 화면을 보고서야 내 자신이 간첩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94년 6월 20일경 전주 MBC 7시 뉴스에 학원계, 노동계, 농민계 침투간첩 이광철 수사기관 추적중), 영문도 모른 채 간첩이 되어 보내야 했던 2년의 수배생활과 10개월의 구속생활은 80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몇 번의 수배와 구속 경험이 있던 나로서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안기부는 빵을 구워내듯 간첩을 만들어내어 정치 사회적으로, 정권안보용으로 게임을 즐기듯이 활용 할지 모르나 무고한 시민은 그 가족과 함께 말할 수

56 이 달의 민변 4월호

없는 교통과 시련을 겪게 되며 그 하루하루가 가혹한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더더욱 나의 무고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안기부에서의 밀실 수사로 간첩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고, 그 조작으로 인해 한 생명이 그 가족과 함께 무참히 파괴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살인행위와도 조금치도 다름없는 만행을 너무나도 천연스럽게 자행하였다. 그것을 보며 인간의 한계를 보았고, 인간에 대한 절망과 함께 '인간은 과연 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간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나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일이라면 창자 속까지 꺼내어 보여주고 싶었고 죽음조차도 달콤한 유혹으로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죽음의 의미조차도 조작당할까 두려웠다. 무소불위의 권력체인 안기부에 대한 한 개인의 저항은 가련하다 못해 참혹할 뿐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아무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절망감과 분노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한줄기 빛으로 다가온 사람이 민변소속 임종인 변호사였다. 임종인 변호사와는 오랫동안 친분을 나누고 있던 벗이었지만 그 당시는 벗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내는 해결사로서, 구원자로서의 기대가 앞섰다.

절망 속에 다가온 한 줄기 빛

수사과정에서도, 재판과정에서도 민변 소속 임종인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가 되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의 처지와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커다란 힘이 되었다. 임종인 변호사는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거듭 주시시키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포기상태에 있던 나도 마음을 추스리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본인은 80년대 몇번의 재판경험을 통해서 재판 또한 권력의 횡포를 합리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굳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형식적 절차로서의 재판을 내 결백을 밝히기 위한 장으로서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나는 결코 아니다" 이 한마디 외에는 할 말도 없었다.

나는 법치가 정치에 밀리고 힘이 법이 되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에서 과연 법조인은 국가권력으로 부터 자유롭고 충실할 수 있는가? 라는 자조 섞인 냉소감에 젖어 있었다.

임종인 변호사는 상처투성이인 나를 믿음과 신뢰로 감싸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설명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무고한 피의자로서의 도리임을 알게 되었다.

임변호사의 헌신적인 모습에 의해 나 자신도 노력으로써 1심재판에 임하였다. 검찰은 결심공판에 이르러 공소사실 대부분을 취소, 변경(전북조직책,전북운동권 동향보고 등 국가기밀누설, 공작금 100만원 수

령 등 금품수수, 회합통신 등 공소사실 4개항 중 2개항 취소, 1개항은 일부취소, 일부변경)하였으나 재판부 유죄판결로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그날 나는 분노와 허탈감 속에서 하얗게 밤을 지냈다. 임변호사는 나보다 더 분노하고 있었다. 오히려 내가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한 재판"이라며 위로를 할 정도였다.

믿음과 신뢰로 이룬 승리

1심판결의 결과로 더욱 단해진 내게 임변호사는 끝까지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싸울 것을 다짐하며 2심재판과 항소이유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할 뿐이다. 만일 그때 절망감 속에서 포기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임종인 변호사의 인내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나는 97년 2월 20일 2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었다.

황장엽 망명사건, 이한영 피살사건 등 공안정국의 칼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던 그 시기에 안기부의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반국가단체구성, 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자가 2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니, 나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결과가 있기까지 갖은 노력을 다한 임종인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5일 앞둔 오늘(3월 25일), 부활의 기쁨이 어떠한지 나는 알 것 같다. 나아말로 죽었다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닌가?

57 피고인석에서 본 민변

이 모든 감동의 드라마는 임종인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해 보여준 끝없는 믿음의 결과로 본다. 피고인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안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그 재판은 단순한 법리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나 역시도 임종인 변호사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재판을 통과시켜 정도로 생각하여 오늘의 값진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임종인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김승현 변호사

이 모든 감동의 드라마는 임종인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해 보여준 끝없는 믿음의 결과로 본다. 피고인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안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그 재판은 단순한 법리 논쟁에 불과할 것이다. 나 역시도 임종인 변호사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재판을 통과시켜 정도로 생각하여 오늘의 값진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임종인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편집자 주: 이 방청기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서울법대 새내기들의 재판 방청기입니다.

서울법대 새내기 시국사건 재판 방청기

1. 진관 스님 사건

일시: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피고인: 진관 스님(박용모)

변호인: 윤기원

관상은 깨어졌지만

이경원(97학번)

C반 97학번들은 1997년 3월 21일 법대 학생회 산하 법계열운동위원회의 주최로 법원 방문을 하게 되었다. 법대에 온 이후 처음으로 법원을 방문하게 되어서 며칠 전부터 무척 기대를 하고 있었다. 10시 5분 법원 앞에 도착, 간단한 주의사항 등을 듣고 조별로 해산, 법원 안을 잠시 둘러보았다. 법의 권위를 상징하고 실행하는 건물이라 그런지 상당히 위엄있고 깔끔하게 잘 건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시 20분경 우리는 우리가 보기로 되어 있던 진관 스님 공판장인 311호 법정에서 들어갔다. 들어가자

마자 법정 안의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우리가 조금 소란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를 받기도 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변호인은 많은 자료를 준비한 듯 옆에 종이더미를 쌓아 놓고 피고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내가 들은 첫 질문은,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때 폭행을 당하셨나요?"였다. 그 질문에 진관 스님은 그렇다며 안기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주먹으로 몇 차례 맞았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또 수사과정중에 안기부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도 증언하였다. 난 솔직히 이 말에 놀랐다. '이런 것은 신문에 날 만한 사실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판사나 검사, 변호인 그리고 공판 과정을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이 말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은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변호인의 말은 계속되었다. 나는 진관 스님의 죄의 유무를 알 수 없었으나, 피고인의 혐의를 부정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변호사님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을 들으며 과연 진관 스님이 정말로 간첩 행위를 한 것인가 하는 회의도 들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진관 스님이 벌을 받

을 만한 일을 안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알 수 없는 것은 판사의 태도였다. 그것은 피고를 너무도 죄인처럼 대하는 태도였다. 나는 고등학교 때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대하여 배웠기 때문에 판사의 그러한 태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후에 이야기를 듣고 주로 간첩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는 종종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판사가 저런 태도로 피고인을 대하면 이미 판결은 뻔한 것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문제가 판사의 '태도' 뿐이었으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갈 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진관 스님에게 그의 시 작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한 것이었다. 물론 그 시가 좀 내용과 문체면에서 과격하고 공산주의적 냄새가 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자신의 시를 자신보고 해석하라는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정말 한심함을 느꼈다. '적어도 판사 정도 되면 그런 것이 실례라는 것을 알 정도의 교양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는 검사의 신문이 있었다. 검사는 주로 변호인과 피고의 말 중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피고가 말보다는 수양을 중시하는 불가에 몸을 담고 있어 그런지 그의 말 속에는 많은 것이 논리에 맞지 않았고 어색하였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것은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 아닌가? 싶은 말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질문을 하였고 그런 점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강압적이었다. 그의 말투는 보통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하는 말투... 바로 그것이었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좀더 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정말 진관 스님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고상한 미국 법정 영화만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원에 간

나로서는 정말 충격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날의 공판이 끝나고, 우리는 그 사건을 맡으셨던 윤기원 변호사님을 따라 서초동에 있는 민변 사무실로 갔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변호사님과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볼 시간을 가졌다. 그 중에서 나는 안기부의 도청이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보안법의 문제성(법조문의 애매성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가 간첩 잡는 것과는 실제적으로 거의 관련이 없으며 국내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최근의 안기부법 날치기안은 7조등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번 법원 방문에서 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법조인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일 것이다. 내가 지금 갈 길은 바로 "법조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그날 법원에서 본 풍경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중립적이지 못한 판사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사람을 깔보는 듯한 검사의 태도도 기분 나빴다. 변호사 역시 그런 상황을 발뺌하고 나서 막지 않는 것을 보고 난 정말 많은 회의를 하였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법 공부를 하여야만 하나?'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법대에 지원한 것도 결국은 사회의 이런 답답한 면들을 조금이나마 개조해보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조금은 유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난 정말 그날의 법정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미래는

이 경 환(97학번)

사실 법대에 들어왔지만 재판에 대해서는 거의 실감을 못한 상태였다. 몇 가지 책을 통해서 재판과정의 영화를 보듯이 흥미있거나 재미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실제로 재판을 보면서 또 다시 많은 환상이 깨지게 되었다. 따분했던 변호사님의 질문들, 딱딱하고 사무적인 법률용어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그리고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의 상상하 가능성 있는 미래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나 사명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민변에서 변호사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다. 인권의 보호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법조계의 의의를 조금은 느낀 것 같다.

이번 법원 방청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면 법조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접해보고 그래서 나의 미래 역시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게 된 계기를 얻은 것일 것이다. 이 느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2. 박충렬 사건

일시: 3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피고인: 박충렬

변호인: 윤기원

판사는 되지 않겠다

채 성 희(97학번)

25일 화요일, 우리 법대 D반 학생들은 학생회 법계열운동위원회의 주도하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충렬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방청했다.

우리가 재판정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었다. 세 명의 판사가 검은 법복을 입고 단상에 점잖게 앉아 있었다. 피고인인 박충렬씨는 판사들이 앉아 있는 단 아래 맞은 편 자리에서, 가운데 앉은 판사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다. 신문은 무척이나 지루했다. 한 시간에 걸친 신문 끝에 판사는 4월 20일에 공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재판정 밖으로 나가 버렸다. 그것이 그날 공판의 끝이었다.

법계위 선배들이 언급한 대로 그날 공판에는 변호사와 검사 간의 치열한 논쟁이나 판사의 명쾌한 판결문도 없었다. 박충렬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판사의 피고인에 대한 질문도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었다.

법정의 지나치게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무척이나 갑갑하고 숨이 막혔다. 한 마디로 그날 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판사는 되지 않겠다는 나의 막연한 생각을 좀더 확고히 한 계기였다고나 할까.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볼 수 있기를

조 제 회(97학번)

지난 3월 25일에는 법대 새내기를 위한 법원 견학이 있었다. 나로서는 법원에 가는 것이, 더구나 재판 장면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참관한 공판은 이른바 '박충렬 사건'으로 현재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었다.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나, 검사측의 기소 이유란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남파 간첩과 접선한 혐의를 두었다가 드러나지 않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기록을 문제 삼아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참관 당일의 공판은 판사의 질문 위주로 진행되어 기대했던 법정 공방은 일어나지 않았다. 판사는 주로 피고인의 과거 운동 경력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그것을 검찰측의 공소 사실과 접속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사실 공판 자체는 짧았고 우리의 배경 지식도 부족하여 거기서 느낀 것은 많지 않았다.

다만 이후에 휴게실에서 변호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변호사님에게 국보법, 안기부법의 반민주성, 현행 수사 방식과 재판 과정의 문제점, 법조계 내부의 보수성,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가 현실 적용 과정에서 표출하는 모순 등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들었다. 나로서는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한다고 하는 국가보안법이 도리어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모순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쨌든 법대 새내기로서 공판을 참관하고 법의 적용 과정을 체험하며 동시에 법의 모순에 대해서도 인

식하게 된 이번 행사는 의미가 컸다고 하겠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3. 구광희 사건

일시: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피고인: 구광희

변호인: 유효석

현실적으로 법조계를 바라보는 계기

기 용 석(97학번)

지난 3월 28일, 법대 A반의 일원으로서 법원을 견학하게 되었다. 사실 집에서 법원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법원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아직껏 한번도 법원에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약간은 창피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미래의 직장이 될지도 모르는 곳에 간다고 생각하니 창피함보다는 기대가 훨씬 컸다. 법원에 들어서면서 '참 고급차가 많구나.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매달리는지 이제야 알겠다'라는 느낌을 받으며 잠시나마 쓸쓸한 생각에 잠겼다.

그날 우리가 방청하기로 한 재판은 작년 연세대에서 일어난 한총련 사태때 한총련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광희씨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우선 법원을 견학하기로 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법원의 분위기는 엄숙하였다. 우선 민사지방법

원에 가서 민사재판을 방청하기로 하였다. 법정에서 어서기에 앞서 한 선배님이 너희들 법원에 온다고 하니까 영화에서 보아왔던 화려하고 멋진 변호인들 간의 설전, 긴장감 넘치는 법정 분위기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라며 우리의 기대를 깨려고 하셨다. 하지만 영화 'A few good men'이나 'The firm'에서 배우들의 멋진 연기를 보아온 나로서는 그 말을 믿기가 싫었다. 그러나 작년에 일어난 'O. J. Simpson' 사건 재판과 같은 분위기를 연상하며 법정에서 들어선 나는 금방 선배의 말에 동감하게 되었다. 법정은 전체적으로 조용했고 변호인들 사이의 치열한 설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가지 사건이 단 몇 분만에 처리되곤 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거의 모든 사안은 미리 서류로 작성되어 재판관과 변호인들에게 나눠지고 재판정에서는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이 무미건조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형사법정에 들어선 우리는 몇몇의 다른 사건을 본 후 기다리던 구광희씨 사건 공판을 구경하게 되었다. 구광희씨의 죄목은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구광희씨는 재판중 검사의 사실확인에서 유인물 제작 사실은 완강히 부인했다. 약간은 비겁하게도 보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뒤 측구장에서 그 사건의 변호를 맡으셨던 유효석 변호사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국가보안법에 관한 것이었다. 원래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한총련에서 내세우는 모토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학생운동을 탄압한다는 것이었다. 즉, 국가보안법이 국가 안보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학생운동등의 사회운동세력의 탄압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님과의 대화가 끝난 뒤 법원을 떠나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나는 앞으로 법대생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 앞으로 법조인이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이고 또한 법의 정의는 어떤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등등. 이번 법원 견학은 참 의의가 있었던 것 같다. 막연히 가졌던 법정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도 하였지만 좀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법조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견학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나의 마음은 법원에 대한 실망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으로 가득차 있었다.

외국인 기장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김인희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이 있다고 본 사례

이 글은 노동판례 모니터링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수행한 판결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감상을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민변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노동판례 모니터링이라는 명목으로 판결을 소개하고 같이 생각해본다. 대상 판결은 서울지방법원 민사제42부 95가합55738, 95가합93549호 퇴직금 사건이고, 결심하고 판결한 판사는 정은환, 황치오, 최석문이다.

1. 대상 판결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원고들인 외국인 기장 크리나우로 작스 미란다등 4명은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서 보잉737호기를 운행하기로 하면서 1990년경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1995

년경 퇴직하였고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했다.

원고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권원은 당연히 자신들이 근로기준법(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들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위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명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의 규정 역시 권원에 해당했다.

사실상 외국인 기장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회사로서는 대한항공에 비하여 후발주자로서 국내의 조종사를 확보할 수 없었던 처지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1995년 말 현재 전체 조종사 중 외국인 조종사가 105명으로 전체 조종사 489명 가운데 거의 1/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이들 외국인 기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외국인 기장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이 퇴직할 때가 되어 퇴직금을 청구하자 이들에 대해서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사의 취업규칙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아직 아시아나항공에

외국인 기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소송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주식회사에는 이들 외국인 원고들과의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고 나아가 이들 외국인 원고들이 퇴직금 제도가 없는 국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퇴직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받게 될 퇴직금 상당액을 감안하여 임금을 정하고 그 임금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처음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은 퇴직금의 지불을 늦추고자 하는 이유가 큰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최소한의 목적, 소송을 오래 끄는 것은 달성되었다. 제1심 소송이 1년 반이나 진행되었으니까. 하지만 결과는 아시아나항공의 최소한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완전한 승리였다. 아마 아시아나항공과 그를 대리한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었으리라.

(2) 판결의 요지

첫째 논점은 별다른 마찰도 없었고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 과연 외국인 기장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하는 점이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대상 판결도 정당하게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 판결 해석에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둘째, 이 부분이 이 판결의 쏠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판결은 어느 판결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최소한 필자가 알기로는- 놀라운 추론을 하기 시작한다.

우선 대상 판결은 사실 인정을 통해 (1)아시아나항공은 부족한 항공기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를 확보함에 있어서 외국 항공사에서 지급하는 국제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채용이 가능했다는 점, (2)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기장들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지급받는 보수는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서 정한 직무와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는 외국인 기장과, 같은 경력과 기술 수준의 내국인 기장에 비하여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기장들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제공받는 주택 등 간접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최소 1.3배 내지는 1.7배 수준에 있다는 점, (3)원고는 아시아나항공과 고용계약 및 추가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임금이 약정한 임금에 한정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4)1996년 2월경 아시아나항공은 외국인 기장을 공급하는 용역회사와 조종사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외국인 조종사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데 그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한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지급한 임금도 원고를 포함한 종전에 근무했던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거쳐 -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합의조항,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사이의 임금 체계의 상이 및 임금액수의 차이, 퇴직금 제도의 존재에 관한 우리나라와 원고 소속 국가 사이의 차이 및 퇴직금도 결국은 임금의 후불적 지불에 다름 아니라는 우리나라 퇴직금 성질에 비추어보면, 피고회사는 원고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그들이 피고회사

를 퇴직할 때 따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 수준과 원고의 실제 근무성적에 기초하여 원고의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운데 퇴직금 선지급이라는 명시적인 명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2. 판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왔다. 편안히 앉아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 가능한 한 사실인정의 문제는 제외하고 생각해 보자.

과연 대상 판결이 인정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그들이 피고회사를 퇴직할 때 따로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음을 과연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가, 둘째, 단지 아시아나항공의 그러한 결정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셋째, 원고들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임금이 약정한 임금에 한정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등을 말이다.

첫번째 점을 살펴보자. 외국인 기장들의 임금이 내국인 기장들의 임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고 처음부터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원고들의 임금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약간의 사실인정 문제가 있다.

이 사건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자료 중 노동부에 대한 질의회시라는 것이 있다. 이는 내국인 기장들이 외국인 기장들에 비하여 임금이 낮아 이를 불만으로 삼자 이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스스로 "외국인의 경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내국인 조종사가 양성되는 대로 철수시킬 것을 계획으로 일시적,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요건과 이에 상응하는 급료로서만 보완하여 대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내국인 기장들과 달리 "외국인 조종사는 비행경력상 민항비행경력 5,000시간과 해당기종의 기장으로서 비행경력시간 500시간 이상자로 제한하여 채용하기 때문에 SKILL-UP을 위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라는 특성을 띠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기장에게는 일정한 기간 동안 1인당 약 1억1천만원 상당의 교육, 투자와 SKILL-UP시키기 위한 투자나 승진 자체가 없으며 또한 각종 복리후생(학자금 지원, 차량유류권 지급, 예경사시 경조금이나 경조휴가 부여, 주택자금 무이자 융자 등)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보수, 신분, 직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국인 차별은 아니다. 외국인이라는 국적으로 동일 조건선상에서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우대해야 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외국인 기장과 내국인 기장의 대우를 살펴보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그 임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높은 임금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주장하는 교육 및 투자 비용, 복리후생을 제한 다음 임금을 계산하고 그 임금에 퇴직금

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해야 옳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계산했는데 그래도 외국인 기장들의 임금이 높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결론은 이렇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인 기장들을 상당히 높은 임금을 조건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기타 복리후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비용을 계산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동등하게 대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진해서 동등하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둘째, 만일 외국인 기장들의 높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스스로 그러한 임금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외국인 기장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배제하는 합의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여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이 있다(서울지방법원 1989. 11. 17. 선고 89나21639 판결). 그렇다면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이를 배제하기로 한 것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 나아가 그러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지 내심의 의사만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퇴직금 규정을 배제할 것, 내지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명시적, 묵시적인 약정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 내지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그 자체가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의사표시로 근로기준법의 잠탈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규정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상 판결은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원고들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모든 임금이 약정한 임금에 한정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회사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만일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강행규정인 퇴직금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여 바로 그 규정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우회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합의가 만일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라고 한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문제삼을 바 없고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려고 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 판결도 인정하다시피 계약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제도를 몰랐으니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든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그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든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고 이에 합의하기 위해서 문구를 그와 같이 정했다는 사정을 보충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참으로 우회적이고 조악해보인다. 차라리 냉정하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간명하지 않을까.

참고로 이와 유사한 사건, 아니 원고만 다르고 따라서 사건 번호만 다른 사건(94가단38869 퇴직금 등, 물론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까지 다투어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한다)에서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용역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도 피고회사의 사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위 근로계

약상 명시적으로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피고회사의 모든 사원들에게 적용되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 원고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급여를 연봉제로 정하였다거나 퇴직금의 지급을 예상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미처 공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3. 이 사건 판결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의 -회사측 또는 근로자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무엇보다도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찾으려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에 있지 않을까 싶다.

위에서 살핀 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임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위 판결은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않으나 싶다. 어떻게든 왜 임금이 높다고 유독 외국인인 원고들만 그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만일 공장에 사람이 필요해서 그 지역에 형성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 한 사람을 고용한 다음 그 노동자가 퇴직하려고 하자 그 높은 임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퇴직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는 유일하게 그것이 가능했는데 이는 단지 원고들이 외국인, 퇴직금 제도를 두지 않은 국가 출신의 의

국인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히 국적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국내의 기업들만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국제화, 세계화 못해서 안달인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대우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갑자기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당연히 받는 퇴직금을 외국인이므로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적에 의한 차별 이전에 국제화, 세계화 추세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2) 다음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의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함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 그것도 의사표시 수준의 의사도 아닌 내심의 의사만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점에 있는 듯하다.

위에서 살핀 대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되자 표면화된 것이다. 소송 이전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 내지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계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다만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이 판결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것도 내심의 의사표시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이 판결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해석한다면 퇴직금 부지불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금 부지불의 약정이라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퇴직금 부지불의 약정과 무엇이 다른가. 매우 과감한 해석이라고 본다.

어찌되었던 이 사건 판결은 약간의 파장을 몰고왔다. 우리는 즉시 항소했는데 원고들과 접촉하고 있는 변호사님 말씀이 당연히 이길 줄 알고 항소심 위임장을 받아두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외국에 연락하여 위임장을 받아 겨우 기일에 맞추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빠른 항소심 진행으로 이 판결이 물고은 약간의 파장이 찾잔 속의 파장으로 끝나길 빈다.

4. 사족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느낀 점

첫째, 노동사건은 아무리 간단하고 쉽게 이길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더라도 항상 불리한 처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소송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사건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우리 사무실에서 소송하여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이 사건은 노동사건이었고 상대는 대기업, 재벌이었다.

둘째, 재판장이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입증을 촉구하면 그 재판은 진 재판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은 결심만 4번 했고 변론갱신을 3번 했다. 그때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시아나항공측에 입증을 촉구했다. 나는 단지 판결문 쓰는 데 좀더 충실하게 하려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고 피고를 승소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 재판부도 피고를 승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와 정치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만큼 이 판결이 무리한 판결이라는 점도 있고, 하여튼 그때 당사자로서 어떻게 소송해야 하는 것인지 답은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 졌다고 생각하고 상소심을 준비해야겠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고 한다. 당연히 이기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 판사도 사람이니까.